#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84 발의연월일 : 2021. 4. 23.

발 의 자:김승수·김성원·김기현

김예지・김 웅・김정재

박대수 · 배현진 · 백종헌

서병수・서일준・유경준

윤창현ㆍ이 용ㆍ이주환

전주혜 • 정진석 • 한무경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되어 왔으나,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흐름과 변화를 담아내기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디지털만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주요 외국 만화시장을 석권하면서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등 한류 문화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최일선에 있음.

하지만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현행 법률 체계

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만화산업의 위상 제고, 진흥 업무 체계 정립 등 만화 관련 분야의 종합적인 체계 정비는 물론, 만화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명시, 표준계약서의 사용,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규정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나아가 만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 기본계획에 만화 융복합 콘텐츠육성과 지원,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 인식개선과 소외계층의 문화향유활성화,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육성 방안 등을 추가하여 만화와 연관된 미래산업의 지원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만화육성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지원 근거를 추가하며, 만화역사의자료 보존과 불법 만화 차단 대책 수립 등을 통해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신설 등).

#### 법률 제 호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를 "디지털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제4호 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활성화 및 종다양성 확장을 위한 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양성"을 "양성 및 창작환경 개선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만화 및 연관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 10. 전 국민의 만화 인식개선과 소외계층의 만화 향유 활성화
- 12.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 육성 방안
-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 14. 출판만화 및 디지털 만화 유통 체계의 선진화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2의 제목 "(만화진흥위원회)"를 "(만화진흥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만화진흥위원회"를 "만화진흥자문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교육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훈련을 희망하는 만화가 또는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만화작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대처"를 "대처 및 관계기관의 협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공동제작만화"를 "국제공동제작만화"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공동제작만화"를 "국제공동제작만화"로 한다.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중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3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하고, 제14조를 제20조로 하며, 제2장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만화의 보존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만화 및 디지털만화와 그 관계 문헌·작품원고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 전시와 출판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

- 을 위한 보관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와 그 관계 문헌·작품원고, 작가 구술 채록, 작가 영상, 유무형의 자료 수집·보존·활용 및 보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 균형발전과 클러스터 지원·육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적 측면에서 만화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만화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 작가 및 종사자 권익 보호

제17조(창작조건의 명시) 만화사업자는 만화창작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만화창작자의 작품 창작료, 수익배분 및 그 밖의 창작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 또는 만화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만화사업자단체를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 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 다)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19조(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만화사업자는 창작업무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만화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	1
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디지털로 제작된 것을 말
<u>말한다</u> .	한다.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화 창작 <u>활성화를 위한 방</u>	4 <u>활성화 및 종다</u>
<u>안</u>	양성 확장을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5
인력의 <u>양성</u>	<u>양성 및 창작환경 개</u>
	<u>선 방안</u>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	6. 만화 및 연관 산업 기반 조

성

7 ~ 9. (생 략)

<신 설>

10.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1. (생략)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 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성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7 ~ 9. (현행과 같음) 10. 전 국민의 만화 인식개선과 소외계층의 만화 향유 활성화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2. 만화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 육성 방안 13. 만화 융복합 콘<u>텐츠 등 미</u> 래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출판만화 및 디지털 만화 유통 체계의 선진화 15. (현행 제11호와 같음)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 제3조의2(만화진흥자문위원회) ① ----만화진흥자문위원회 제5조의2(교육훈련의 실시) ①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훈련 을 희망하는 만화가 또는 종사 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생 략)
  - 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1.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 2 · 3. (생략)

제13조(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제13조(국제공동제작만화의 한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 관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 력이 있는 자에게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교육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 진법 | 을 준용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에 참여하는 만화작가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및 관계기관의 협조

- 2 · 3. (현행과 같음)
- 인정) ① 공동제작만화는 해당 만화 인정) ① 국제공동제작만

만화의 창작 또는 제작에 참여 하거나 활용하는 인적·물적 요소나 해당 만화의 예술적· 기술적 특성이 한국만화의 인 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한국 만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생 략)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u>화</u>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0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①
관리하여
<u>야 한다</u> .
○ ○ 〈뉟케크 키 Ó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만화의 보존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만

화 및 디지털만화와 그 관계

문헌・작품원고 등 만화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출판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예술적・역사

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한 보

관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

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신 설>

<신 설>

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와 그 관계 문헌·작품원고, 작 가 구술 채록, 작가 영상, 유무 형의 자료 수집·보존·활용 및 보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 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 균형발전과 클러스 터 지원·육성)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지역적 측면에서 만 화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 로 조성되도록 하며, 만화산업 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장 작가 및 종사자 권익 보호
제17조(창작조건의 명시) 만화사
업자는 만화창작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만화창작자의 작품
창작료, 수익배분 및 그 밖의
창작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 또는 만화사업자단 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만화사업자단체를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 시 우

제19조(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만화사업자는 창작업무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만화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u>제4장 보칙</u>
<u>제14조</u> (권한의 위임) (생 략)	<u>제20조</u> (권한의 위임) (현행 제14
	조와 같음)